■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3.1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1.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취업자 유형	[ ] 청년(15세~29세) [ ] 60세 이상 사람 [ ] 장애인

2. 취업 시 연령

⑤ 2014.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 2014.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⑥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년 월 일 (입대일·소집일: , 전역일·소집해제일:)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⑤ - ④)	년 월 일

* ⑥ 병역근무기간 및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3. 감면기간

⑧ 시작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⑨ 종료일*: 년 월 일 * 시작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2015. 12. 31.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